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3.2. 27.(월) 조간 2023. 2. 26 (일) 12:00	배 포 일시	2023.2.24.(금)		
담당 부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 시스템3팀	책임자	팀장	황명기	02-6261-2913
		담당자	사무관	이유영	02-6261-2914
	기초의료보장과	책임자	과장	백진주	044-202-3090
		담당자	사무관	김행미	044-202-3097
		담당자	사무관	신형원	044-202-3094
	장애인자립기반과	책임자	과 장	한영규	044-202-3320
		담당자	사무관	방우식	044-202-3321
	장애인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백경순	044-202-3340
		담당자	사무관	유운용	044-202-3350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편의증진

- 2월 중 복지로 신청대상 5종 확대 (39종 → 44종) -

* 언어발달지원(2.13), 의료급여 3종 및 장애인자립자금대여(2.27) 등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언어발달지원, 의료급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를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지난 2월 13일(월) 언어발달지원사업 복지로 신청서비스 개시에 이어, 오는 27일(월)에는 의료급여 3종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①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 (지원기준) 부모(조부모 등)의 장애유형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인 저소득 가구 아동

* (지원금액) 1인당 바우처 정부지원금 22만 원, 소득기준별 차등지급(붙임1)



②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앞으로는 의료급여 중 임신·출산진료비, 요양비, 본인부담면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붙임3)

- * (임신출산진료비)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비 지원
- * (요양비) 자동복막투석 재료(만성신부전 환자), 당뇨병소모성 재료 및 관리 기기, 출산비(의료급여기관 외 출산) 등 지원
- * (본인부담면제) 1종 수급권자 중 20세 미만 중·고등 재학자, 임신부, 가정 간호 대상자의 의료급여 외래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비급여 제외)

③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장애인의 자립과 재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이다.

- * (지원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 (붙임2 참조)
- * (융자조건) 금리 최고 연 2.0%, 10년간 대출(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그동안 이와 같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가 집이나 직장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복지로는 중앙부처 360여 개 사업 및 지자체 4천여 종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44종의 온라인 신청, 복지멤버십, 위기가구 도움 요청 및 부정수급 신고 등을 지원하는 **종합포털서비스**로

* '22년 포털 방문 수 2,720만 8,876건, 온라인 신청 126만 842건

○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상세 안내 www.bokjiro.go.kr 참조, 온라인신청서비스 현황 붙임4 참조)

□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들이 추가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복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언어발달지원(바우처) 사업 개요
 2.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지원사업 개요
 3. 의료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 사업 개요
 4. 복지로 온라인신청 현황

붙임 1

언어발달지원(바우처) 사업 개요 *장애부모를 둔 비장애아동 대상

<장애인서비스과>

- (목적)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 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 (사업규모) '23년 6억 5,100만 원, 지원인원 450명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중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인인 경우

* 양쪽 부모 또는 양쪽 조부모가 해당 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바우처 정부지원금 22만 원, 소득기준별 차등지급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	월 22만 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 원	2만 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18만 원	4만 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월 16만 원	6만 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마형)			월 14만 원	8만 원

- (제공인력)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독서지도사, 교사 자격증*, 수화통역사 소지자

* 교사 자격증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붙임 2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개요

<장애인자립기반과>

- ☐ (사업목적) 자립과 재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
- ☐ (사업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은행
- ☐ (대여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 등록장애인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은 대여 불가

☐ (융자조건)

융 자 조 건			
목적 및 대출한도(가구당)	대출조건	이 율	융자기간
- 목적 :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비, 보조기기 구입, 자기계발훈련비, 의료비 등 - 무보증 대출 : 1,200만 원 이하 (단,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담보 대출 : 5,000만 원 이하	- 무보증 대출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금리 최고 연 2.0%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 금리 최고 연 3.0%)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대여절차)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신청 → 시·군·구 심사·융자 추천 → 금융기관 방문 및 융자 신청 → 대출 심사 및 실행

기 존	2023년.2월 이후
❶ 지자체 방문 신청 후 지자체 심사, 추천 과정을 거친 후 ❷ 금융기관 방문 신청	⇒ ❶ 지자체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신청 이후 지자체심사, 추천 과정을 거친 후 ❷ 금융기관 방문 신청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대여 결정(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붙임 3

의료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 사업 개요

<기초의료보장과>

□ 제도 개요

- (목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대상자)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및 다른 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 (지원내용)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 지원

* (1종) 입원비 없음, 외래 1~2천 원 / (2종) 입원 10%, 외래 1천 원~15%

□ 온라인 신청 가능 사업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
 - (지원내용) 1·2종 구분 없이 임신 1회당 다태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 * (사용범위) 임신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포함),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포함)

○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의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자
- (지원내용)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만성신부전환자), 당뇨병소모성 재료 및 당뇨병 관리기기(당뇨병환자), 출산비(의료급여기관 외 출산) 등

○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 (지원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20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임신부, 가정간호 대상자
- (지원내용) 의료급여 외래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비급여 제외)

붙임 4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현황 (44종) ('23.2월말 기준)

☞ '23.2월 개통서비스 음영표시

순번	대상사업	담당기관	개시
1	양육수당	보건복지부	2011년
2	보육료	보건복지부	2011년
3	유아학비	교육부	2011년
4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보건복지부	2013년
5	장애인활동지원	보건복지부	2013년
6~9	초중고교육비(4종)(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	교육부	2013년
10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2013년
11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2014년
12	한부모가족지원	여성가족부	2016년
13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보건복지부	2017년
14	요금감면서비스(5종) 신청	한국전력, 산업부(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방송통신위원회(KBS, 과기부(통신사) 등	2017년
15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2017년
16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2018년
17	여성청소년 생리대바우처 지원	여성가족부	2018년(시범) 2019년(전국)
18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2018년
19	교육급여	교육부	2018년
20	장제급여	보건복지부	2018년
21	결식아동급식지원	보건복지부	2019년
22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보건복지부	2019년
23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건복지부	2020년
24	청소년특별지원	여성가족부	2020년
25	에너지바우처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2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토교통부	2021년
27	영아수당	보건복지부	2022년
28	첫만남이용권(바우처)	보건복지부	"
29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보건복지부	"
30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
31	청년월세	국토교통부	"
32	해산급여	보건복지부	"
33	방과후보육료지원	보건복지부	"
34	장애수당	보건복지부	"
35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
36	차상위계층확인	보건복지부	"
3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여성가족부	"
38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보건복지부	2023년
3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
40	언어발달지원	보건복지부	'23.2.13
41~43	의료급여 3종(임신출산,요양비,본인부담면제)	보건복지부	'23.2.27
44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보건복지부	'23.2.27